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28814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론 종결 2018. 5. 9

판결 선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화성시 I 대 6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9㎡ 및 같은 도면 표시 10, 9, 7, 8, 5, 4, 1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9㎡ 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 화성시 I 대 677㎡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I 대 6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9㎡ 및 같은 도면 표시 10, 9, 7, 8, 5, 4, 1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9㎡ 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화성시 I 대 677㎡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J는 K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L, 피고 F, 피고 G, 피고 H를 자녀로 두었다. 위 L은 M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를 자녀로 두었다.

나. J는 2002. 10. 11.에, L은 1996. 4. 4.에, M은 1998. 7. 30.에 각 사망하였다.

다. 그는 1959년 무렵까지 화성시 I 대 6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주문 기재 (가), (나) 부분에 연면적 105.8㎡의 목조 및 시멘트블록조 농가주택(미등기 건물로서,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및 증축하였다. 현재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① 1980년대에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② 1997. 8. 11.

M 명의의 1996. 4. 4.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으며, ③ 2003. 6. 13. 피고 B 명의의 1998. 7. 3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④ 2017. 7. 27. 원고 명의의 2017. 7. 1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요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주택은 J로부터 L을 거쳐 피고 B에게 증여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한 권리행사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증여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1)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의 단독 소유자인 이상, 피고 B을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는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강건우

별지

1)피고 B은 2018. 2. 26.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8. 5.

9.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또한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을 통하여도 피고 B의 의사나 주장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